

평균 42 일 보유인데 왜 거래의 91.7%가 선취수수료인가

보유기간을 묻지 않는 절차에서 나온 7.2 배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거래의 91.7%가 선취수수료로 몰린 결과를 소비자의 취향이 아니라 선택 절차의 산물로 본다. 확인한 판본에서 설명의무는 부담하는 수수료를 알리라고 정하고, 적합성 원칙이 확인할 정보에는 예정 보유기간이 없다. 어느 방식이 싼지는 보유기간을 넣어야 계산된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 년 7 월 31 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항목	값	비고
ETF 신탁 판매액	64 조원(103 만건)	'25.1 월~'26.5 월 주요은행
투자자 평균 보유기간	42 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기준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	전체 거래의 91.7%	
실제 수취 신탁수수료	최적 선택 대비 7.2 배(3,948 억원)	
발령 주체와 날짜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2 국, 2026.7.31	

발령 자료는 '25.1 월~'26.5 월 주요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이 64 조원(103 만건)에 이른다고 적었다.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서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42 일이라고 밝혔다. 전체 거래 중 91.7%가 단기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했다고 적었다.

은행이 신탁수수료 최적 선택 대비 7.2 배(3,948 억원) 수준의 수수료를 실제로 수취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료는 매우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으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적었다. 고령층 및 투자경험 미보유 계층에서 ETF 신탁 거래가 지속 증가하는 등의 사정도 함께 적혔다.

금융감독원은 ETF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및 판매절차 개선을 위해 TF 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은행 KPI 및 판매전략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개선안의 내용과 시행 시기는 이 자료에 적히지 않았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이 발령 자료는 두 수수료가 각각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아래는 연구소가 협회 규정 원문과 보도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 12 조 제 2 항은 신탁보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와 금액을 정하도록 한다. 같은 규준 제 13 조 제 3 항 가목은 중도해지 시 선취 신탁보수를 다룬다. 해지 이후 기간분을 일할 계산해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선취수수료는 가입 즉시 약 1%를 내는 방식이고, 후취수수료는 해지할 때 보유기간만큼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준이 정한 원칙과 집계된 결과는 같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선취를 단기매매에 불리한 방식으로 적었다. 실제 수취액은 최적 선택 대비 7.2 배였다. 모범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협회의 자율규제이고, 반환 조항에는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두 가지가 같린 이유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부과 시기가 앞이면 계약을 맺는 시점에 금액이 정해진다. 계약을 다시 맺을 때마다 그 금액이 새로 생긴다. 환매와 재가입이 잦을수록 부과 횟수가 늘어난다. 목표수익률을 낮게 정하면 그 수익률에 이르러 환매하는 시점이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매우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으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고 적었다.

적용되는 규칙은 이 선택을 소비자에게 남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4)는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설명사항으로 명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 제 1 호가 이를 구체화한다. 두 방식의 요율을 모두 알리면 이 의무는 이행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가 확인하도록 정한 정보는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이다. 시행령 제 11 조 제 3 항 제 2 호는 연령과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를 더한다. 예정 보유기간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다만 이 확인은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6 년 1 월 2 일 개정 판본까지 있다. 시행령 제 11 조 제 7 항이 위임한 금융위원회 고시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탁업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담당하고, 자본시장법 제 46 조와 제 47 조는 삭제된 조문으로 남아 있다. 자본시장법 제 102 조는 신탁업자에게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지운다. 어떤 수수료 방식을 권해야 하는지는 그 조문에 없다. 판매 시점에 보수가 확정되는 구조는 이 지면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다. 보험 모집수수료를 초년도에 많이 지급하도록 정한 구조에서 계약을 갈아타게 하는 권유가 늘어난 일이 그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개편 대상에 은행 KPI 와 판매전략을 함께 넣은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부담이 큰 사람은 목표수익률에 이르러 환매한 뒤 다시 가입한 사람이다. 42 일 안팎으로 보유하면서 선취를 고른 사람이 여기 해당한다. 전체 거래의 91.7%가 그 선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및 투자경험 미보유 계층에서 이 거래가 지속 증가하는 등의 사정을 함께 적었다.

실제 수취액은 3,948 억원이다. 이 값이 최적 선택 대비 7.2 배이므로 최적 선택이었다면 약 550 억원 수준이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석치는 545 억원이다. 차액은 약 3,400 억원이다. 다만 발령 자료는 최적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보도는 이를 투자기간에 맞는 수수료를 선택한 경우로 적었다.

개인 단위로 보면 이렇다. 1,000 만원을 맡겼고 최적 선택 시 수수료가 1 만원이라고 하자. 7.2 배를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부담은 7 만 2,000 원이다. 가정을 넣은 계산이고 특정 계약의 금액이 아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점에 빠지므로 계좌에는 뺀 뒤의 금액이 출발점으로 찍힌다. 수수료는 손실 항목으로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 후취를 골랐다면 얼마였을지는 계약서에도 계좌에도 없다. 비교할 금액이 없으면 더 낸 뭇을 셀 수 없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소비자경보는 주의를 알리는 조치다. 선취와 후취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지 정하는 절차를 바꾸는 조치는 이 자료에 적히지 않았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37 조 제 1 항 제 2 호는 청약철회 대상으로 금전신탁계약을 들면서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했다.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은 따로 들었다. 맺은 계약이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7 일 청약철회로 되돌릴 수 없다.

- 설명의무는 부담하는 수수료를 알리라고 정할 뿐, 예정 보유기간을 넣어 두 방식을 비교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정하지 않는다.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서명이 남으면 선택의 결과는 소비자가 진다.
- 모범규준은 중도해지 시 선취 신탁보수의 잔여기간분 반환을 원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집계된 결과는 선취가 단기매매에 불리했다는 것이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신탁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수수료 부과 방식이 선취인지 후취인지 찾아 확인한다. 계약일과 환매일을 적어 실제 보유일수를 센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 제 3 항에 따라 판매 과정의 기록 열람을 은행에 요구한다. 같은 조 제 4 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10 일 안에 응하도록 정한다.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같은 법 제 47 조의 위법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2 항은 위반을 안 날부터 1 년,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안에 요구하도록 정한다.

금융회사

- 신탁계약 체결 화면에서 예상 보유기간을 입력받고, 선취와 후취의 부담 금액을 각각 계산해 나란히 보여 준다. 두 방식의 효율을 적어 두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당국

- TF 개선안에 수수료 방식별 비교 금액의 제시를 설명의무의 이행 방법으로 넣을지 정한다. 중도해지 시 선취 신탁보수의 일할 반환 원칙이 지켜졌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TF 개선안이 수수료 체계 자체를 바꾸는 쪽인지, 판매절차의 설명 방법을 바꾸는 쪽인지. 금융감독원이 밝힌 것은 TF 구성과 논의까지다.

A 로 가면 ·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쪽이면 짧게 보유하는 거래에 선취를 적용하는 계약이 줄어, 소비자가 따로 고르지 않아도 부담이 달라진다.

B 로 가면 · 설명 방법만 바꾸는 쪽이면 선택은 소비자에게 남고, 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알렸는지만 달라진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개선안 본문에 수수료 부과 방식의 적용 요건에 관한 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설명·확인 절차에 관한 항목만 있는지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상품	특정금전신탁 시장대표지수 ETF
금융사건	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란	편
	수수료를 12 배 먼저 주자 갈아타기 민원이 54% 늘었다 개인이 두 달 만에 14 조 1,000 억원을 산 2 배 상품
피해 구제	불완전판매 다투기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25.1 월~'26.5 월 주요은행 ETF 신탁 판매액 64 조원(103 만건)	1 차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2 국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2026.7.31) KDI 전제본. 원문 "'25.1 월~'26.5 월 주요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이 64 조원(103 만건)에 이르고..." 원 발표 자료는 7 쪽 PDF 첨부(R26071273.pdf)이고 금융감독원 fss.or.kr 본문과 PDF 첨부는 열지 못해 전제본 본문만 확인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901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서 투자자 평균 보유기간 42 일	1 차	원문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서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42 일로 단기거래가 다수이며 ..." 모집단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로 한정돼 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901
전체 거래 중 91.7%가 단기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	1 차	원문 "전체 거래 중 91.7%가 단기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했고..." 모수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901
은행이 신탁수수료 최적 선택 대비 7.2 배(3,948 억원)를 실제 수취	1 차	원문 "은행은 신탁수수료 최적 선택 대비 7.2 배(3,948 억원) 수준의 수수료를 실제로 수취했으며..." 이 자료는 최적 선택의 정의를 적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901
매우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으로 수수료 부담 가중, 고령층 및 투자경험 미보유 계층에서 거래 지속 증가	1 차	원문 "매우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으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함", "고령층 및 투자경험 미보유 계층에서 ETF 신탁 거래가 지속 증가하는 등". 뒤 문장은 '등'으로 열려 있어 열거를 닫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901
금융감독원 TF 구성 및 은행 KPI·판매전략 개편 계획	1 차	원문 "금융감독원은 ETF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및 판매절차 개선을 위해 TF 를 구성해...", "은행 KPI 및 판매전략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임". 개선안 내용과 시기, 절차 변경 조치는 전제본에 없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901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신탁보수 부과 시기와 중도해지 시 선취 신탁보수의 일할 반환을 정한다	1 차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제 12 조 제 2 항 "④ 신탁보수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시기 및 금액", 제 13 조 제 3 항 가목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시 원칙적으로 신탁업자가 받은 선취 신탁보수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수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화면에 제정·시행일 표기가 없어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294&historySeq=1440
선취수수료는 가입 즉시 약 1%, 후취수수료는 해지 시 보유기간만큼 부담하는 방식	2 차	이데일리 2026.7.30 「은행 ETF 수수료 7 배 더 책겼다...금감원 판매관행 손질(종합)」. "가입 즉시 약 1%의 수수료를 내는 선취수수료를 선택한 비중은 91.7%에 이르렀다", "1 년 이내 단기 투자자인 경우 상품을 해지할 때 보유기간만큼 수수료로 부담하는 후취수수료가 더 유리하다". KDI 전제본에는 부과 구조에 관한 문언이 없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625206645519768
최적 선택 시 은행이 받을 수수료는 545 억원 수준	2 차	같은 기사. "고객이 투자기간에 맞는 수수료를 선택했다면 은행이 받을 수수료는 545 억원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수준이었겠지만", "실제 수취한 수수료는 3948 억원으로 적정 수준의 7.2 배에 달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625206645519768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4)가 투자성 상품 설명사항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명시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 확인 판본은 법률 제 17292 호다.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4) "...including fees to be paid by financial consumers". 법률 본문에 수수료가 명시돼 있고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한다. 2026.1.2 개정 판본(법률 제 21065 호)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6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 제 1 호가 위 설명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로 구체화	1 차	시행령 영문본, 확인 판본은 대통령령 제 34888 호(2024.9.10)다. 제 13 조 제 4 항 제 1 호 "Fees to be borne by financial consumers". 이 조문은 법 "Article 19 (1) 1 (b) (iv)"를 그대로 지목하므로 적어도 이 시행령 시점까지 항·호 번호는 유지된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9086&cseq=208160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가 투자성 상품에서 확인하도록 정한 정보는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이며 예정 보유기간이 없다	1 차	영문본(법률 제 17292 호)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a) The purpose of acquisition or disposal...; (b) The status of property; (c) Experiences in acquisition or disposal". 같은 항 제 4 호는 "Other informa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로 열려 있다. 2026.1.2 개정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정 명제는 확인한 판본에 한정된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6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1 조 제 3 항 제 2 호가 투자성 상품에 더한 확인 정보는 연령,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이며 기간 항목이 없다	1 차	시행령 영문본(대통령령 제 34888 호) 제 11 조 제 3 항 제 2 호 가목 "The age of the ordinary financial consumer", 다목은 제 1 호 나목·다목을 준용해 "Level of understanding of financial products", "Attitudes to risks in consideration of expected profits, expected losses, etc."를 든다. 제 1 호 가목의 "Experience in acquiring and disposing of financial products"는 제 2 호에 들어 있지 않다. holding period·period·term 표현은 이 조문에 없다. 같은 조 제 7 항이 적합성 판단 기준 등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고시 단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9086&cseq=2081600
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에는 법률 제 17292 호 이후 제 17799 호·제 19532 호·제 20305 호·제 21065 호 개정 판본이 있다	1 차	판본 목록에 No.21065(20260102), No.20305(20240814), No.19532(20231012), No.17799(20211230), No.17292 가 표시된다. hseq=54646 본문은 옛 판본이므로 이 원고의 법령 인용은 확인한 판본 기준이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TwoView.do?hseq=54646
자본시장법 제 46 조(적합성 원칙)와 제 47 조(설명의무)는 삭제된 조문이다	1 차	영문본(법률 제 19566 호, 2023.7.18) 조문 목차에 "Article 46: Deleted", "Article 47: Deleted"로 표기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Title.do?hseq=64739
자본시장법 제 102 조는 신탁업자에게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정하고 수수료 부과 방식은 정하지 않는다	1 차	영문본(법률 제 19566 호) 제 102 조 제 1 항 "A trust business entity owes the fiduciary duty of due care to beneficiaries in managing the trust property.", 제 2 항 "...shall execute its business affairs in good faith to protect beneficiaries' interests." 수수료 부과 방식에 관한 문언은 없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4739&cseq=196265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37 조 제 1 항 제 2 호는 청약철회 대상 금전신탁계약에서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하고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따로 든다	1 차	시행령 영문본(대통령령 제 34888 호) 제 37 조 제 1 항 제 2 호 다목 "A money trust contract (excluding a specified money trust)", 라목 "Highly complex money trust contract"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9086&cseq=2081627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은 7 일이다	1 차	영문본(법률 제 17292 호) 제 46 조 제 1 항 제 2 호 "In cases of an investment product or advisory service on financial products: Seven days from either of the following dates..."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9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 제 3 항 열람요구권과 제 4 항의 최대 10 일 이내 응답	1 차	영문본(법률 제 17292 호) 제 28 조 제 3 항 "A financial consumer may request a financial product distributor or advisor to allow him or her to inspect... the records.", 제 4 항 "...within a maximum of 10 days from the date the financial product distributor or advisor receives such request."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72
위법계약해지는 위반을 안 날부터 1 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안에 요구해야 한다	1 차	시행령 영문본(대통령령 제 34888 호) 제 38 조 제 2 항 "...a perio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financial consumer becomes aware of the violation of contract conclusion. In such cases, the relevant period shall be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contract conclusion." 법 제 47 조 본문의 위반 대상은 "Articles 17(3), 18(2), 19(1) or (3), 20(1), or 21"이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9086&cseq=2081628
최적 선택 시 신탁수수료는 약 550 억원 수준	파생	계산식 3,948 억원 ÷ 7.2 = 548.3 억원. 7.2 배가 반올림된 값이라 역산에 오차가 있어 약 550 억원 수준으로 적는다. 이데일리 보도의 금융감독원 분석치는 545 억원이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901
실제 수취액과 최적 선택액의 차액은 약 3,400 억원	파생	계산식 3,948 억원 - 545 억원 = 3,403 억원. 역산값 548 억원을 쓰면 3,400 억원이다. 두 경우 모두 약 3,400 억원이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901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593 자	22 건	18 건 (82%)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금융감독원 TF 의 개선안이 공개됐는지, 그 본문에 수수료 부과 방식의 적용 요건이 들어갔는지, 은행권 ETF 신탁의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과 평균 보유기간이 다시 집계돼 발표됐는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